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요령

건설기술인협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기능사 경력신고 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기한이 대폭 늘어났다. 또 기술자들은 경력신고 때 과거 경력증명에 필요한 경력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능사 보수교육기간도 당초의 절반인 1주일로 줄어들었다.

## 既 신고자 변경신고 가능

### ■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신고의무자와 임의신고자로 나눌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로서 기술계(기사·기술사)기능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와 자격증 미소지자로 건설기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인정기술자이다.

여기서 건설관련업체의 범위는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측량업자, 품질시험대행기관 또는 건설안전전문기관이다.

신고요령에서는 지난 1월 31일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



록된 건설기술자는 기등록된 서류로 경력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전 신고요령과는 달리 이들에 대해 신고기간내 1회에 한해 과거의 경력

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다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추가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기등록된 서

류로 경력신고에 갈음하도록 했다.

### ■ 신고 및 보고

건설기술자는 신고일 현재까지 자신의 경력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해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종전 신고요령이 모든 기술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비해 개선된 신고요령은 기술자 종류별로 신고일정을 정했다.

- 기술계 기술자격자는 6월 30일까지

- 학·경력인정기술자는 9월 30일까지

-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했다.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신고해도 되며, 건설기술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관련업체에서 소속 건설기술자를 일괄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토록 했다.

2월 1일 이후 신고한 기술자는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했으며,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는 경력확인원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의 경우 과태료(5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참여사업이 변경된 경우는 수시로 신고할 수 있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원을 첨부해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관련업체는 오는 3월 31일 현재 실제 고용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서식에 따라 입력한 자기 디스켓과 출력서류를 4월 30일까지 기술인협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의무신고대상 기술자는 보유현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할 인원이 적은 경우는 자기 디스켓이 아닌 서식에 따른 문서로 보고해도 되도록 한 점이 기존의 신고요령과 다르며, 기술자 취업 및 퇴직 등 변동이 없는 경우는 매분기별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신고서 작성요령

건설기술자는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원, 졸업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경력확인원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수행한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되 작년 10월 12일 이전의 경력은 별도의 경력확인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그 이후의 경력은 경력확인원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력확인원에 의한 확인이 없는 경우도 신고내용을 접수·관리하되 제증명 발급시 본인 신고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 경우 추후 경력확인원을 보완하면 본인신고임을 표기하지

않는다.

졸업증명서는 입사 때 제출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 대체해도 되나 인정기술자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밖에 소지한 자격증 모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신고자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기존 신고서 작성요령이 제재사항, 실제 근무일수, 참여사업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데 비해 이를 삭제토록 했다. 과거 소속회사기록의 경우 자영업, 법인에 따라 폐업에 따른 확인을 받도록 했던 것도 대폭 간소화해 확인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 ■ 신고절차

기술인협회는 지방에 소재한 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편의를 위해 3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신고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4월까지 현지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거나 업체에서 취합해 일괄 신고할 수 있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사의 등록비를 3만5천원으로 낮추도록 했으나 기술사와 기사, 학력경력자의 등록비는 7만원, 연회비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종전과 같다.